



■ 전체 일러두기

- I. 「2023 경찰청 범죄통계」부터 범죄통계원표의 신설·수정 통계 항목을 반영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함.
- II. 「2024 경찰청 범죄통계」부터 경찰청 통계에 해양경찰청에서 입건한 사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양경찰청의 자료는 「해양범죄통계」를 참고.

1. 「경찰청 범죄통계」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산 입력한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 통계원표)를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에서 정제·분석하여 연 1회 공개하는 공식통계자료이다. 고소·고발 사건과 불송치 결정 사건을 모두 포함하므로, 최종 형사처분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다음 사건들은 범죄통계원표 전산 기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범죄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소년부 송치(촉법소년) 사건, ② 각하 사건, ③ 즉결심판 사건, ④ 군 수사기관 이송 사건.
3. 범죄통계의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발생원표
형사사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입건된 시점에 작성된다. 따라서 발생 건수는 실제 발생한 모든 범죄가 아니라, 형사 입건된 사건 수를 의미한다. 발생원표의 작성단위는 '사건'이며, 1건의 형사 입건 사건 당 1건의 발생 원표가 작성된다.
 - 2) 검거원표
수사기관이 형사 입건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 작성된다. 피의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소 1명 이상이 검거되면 원표를 작성하며, 이후 추가 검거가 이루어져도 재작성하지 않는다. 검거원표의 작성단위는 '사건'이다.
 - 3) 피의자원표
형사입건된 사건에서 검거된 피의자 전원에 대해 작성되며, 수사 중지된 사건도 포함된다. 피의자원표의 작성단위는 '인원'이며,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
4. 범죄통계의 기본 산출 단위는 '사건 수'와 '인원'이다. 구체적으로 발생건수는 발생원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되고, 검거건수는 검거원표의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피해자 인원은 발생 원표에 기록되는데, 대표 피해자 1인의 정보와 전체 피해자 수가 각각 집계된다. 피의자 인원은 피의자원표의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송치·불송치 결정되거나 수사중지 된 피의자를 모두 포함한다. 추가적으로 <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항목에서는 산출 단위로 '금액(만원)'이 사용된다.
5. 범죄통계 일부 항목의 별도 집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체피해상황>은 상해 또는 사망한 피해자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집계된다. <피의자 특성>은 피의자중지 사건, 피의자가 법인인 사건, 피의자의 성별이 미상인 사건을 제외하고 통계가 산출된다.

일 러 두 기

6. 범죄통계의 죄명 분류는 형법상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가 혼합되어 있으며, 범죄양상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분류된다. ① **위반행위 속성**(범죄행위의 내용적 특징), ② **법익침해 유형**(범죄행위로 인해 침해된 보호법익의 특성). 이 두 기준 간에 판단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 속성을 제1분류 원칙으로 적용한다. 해당 분류기준은 「2011 범죄통계」부터 적용되었으며, 부록의 「2011-2025」 죄명·죄종 변경 현황표에 상세 목록과 세부 분류기준이 수록되어 있다.
7. 범죄통계 일부 항목의 별도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살인>은 기수와 미수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죄질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상세 통계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국제 범죄통계 공인 기준을 제시하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경우, 살인범죄(Homicide, Intentional Homicide)에 미수 범죄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가법’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특경법’으로 약칭한다.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는 각 통계 범주에 행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공무원피의자 소속기관>은 객관적인 기관별 비교를 위해 「2018 범죄통계」부터 공무원 소속기관 현원 대비 비율을 추가하였다.



■ 장별 일러두기

I. 범죄개요 및 주요지표범죄 분석

1. <전체범죄 발생 및 검거 추세>의 '발생비'는 인구 규모를 고려한 상대적 범죄 발생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단위 인구 10만명 당 발생 건수로 산정되며,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된다.

$$\text{발생비} = (\text{발생건수} \times 100,000) \div \text{해당 연도 주민등록 인구수}$$

해당 연도 주민등록 인구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 통계 작성 연도와 동일한 해에 발표되는 수치를 사용한다. 참고로, 「2015 범죄통계」까지는 인구 추정을 위해 당해 연도의 추계인구(통계청)를 사용했으나, 「2016 범죄통계」부터 기준 인구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로 변경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II. 범죄 발생, 검거 및 수사결과 현황

1.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는 해당 연도에 경찰이 입건한 사건 중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승인까지 완료한 사건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경찰의 수사 권한에 따라 처리된 사건만을 포함하며, 검찰·특별사법경찰·해양경찰 등 다른 기관이 수사한 사건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순히 '해당연도에 발생한 모든 범죄사건의 수'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 '발생건수'는 범죄사건의 실제 발생 시점이 아닌 통계원표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집계되므로, 통계상의 집계연도와 실제 범죄가 일어난 시점 간에는 시간적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예컨대 2024년에 발생한 범죄가 2025년에 고발되어 입건된 경우, 해당 사건은 2025년 통계에 포함되므로, 실제 발생 시기와 통계 간 시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통계를 활용하여 범죄의 시간적 또는 계절적 발생 요인을 분석할 경우, 이와 같은 집계방식의 특성을 고려한 해석과 주의가 필요하다.
3.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는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의 수를 동일 연도의 발생 건수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즉, 이 수치는 해당연도에 발생한 사건 중 검거가 이루어진 사건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양자를 1:1 대응하여 해석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 참고로, 「2010 범죄통계」까지는 '검거율', 「2011 범죄통계」부터는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다.
4.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지역별 통계'는 시·도경찰청별 단위로 집계된 통계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통계원표를 승인한 경찰관서의 소속 시·도 경찰청을 기준으로 분류되며, 실제 범죄가 발생한 지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한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통계'는 '범죄 발생지 기준' 통계가 아니라 행정처리의 주체가 된 '경찰관서 기준' 통계임을 유의해야 한다.
5.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중 '검거인원'의 성별 분류 항목에서의 '미상'은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인한 값이다. 통상 피의자가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중지되는 사건의 경우, 검거원표는 작성하지 않지만 피의자원표는 작성하도록 하는데, 이 때 피의자의 연령, 직업 등 일부 항목은 '미상'으로 기재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 「2022 범죄통계」까지는 수사중지 결정을 포함한 모든 피의자가 검거인원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 범죄통계」부터는 수사중지 중 피의자중지자는 검거인원 집계에서 제외되도록 집계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러두기

6. <범죄사건 처리기간, 구속·불구속상황, 사법경찰관 결정>의 ‘인원’은 피의자원표를 승인한 전체 피의자 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사중지 결정이 이루어진 모든 피의자가 포함된다.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의 ‘검거인원’은 피의자중지자를 제외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활용 시 ‘인원’ 통계와의 직접적인 수치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7. 2020년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 결정> 항목에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가 있었다. 먼저 ‘기소’는 ‘검찰송치’로, ‘불기소’는 ‘불송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수사중지’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는 다시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로 세분화 되었다.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성인에 준하여 ‘검찰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도록하여 해당 항목은 삭제되었다.
8. <사법경찰관 결정>에서 검찰송치는 ‘책임송치’, ‘가정폭력범죄송치’, ‘아동학대범죄송치’, ‘즉결심판청구기각송치’로 구분된다. 이 중 ‘책임송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른 송치로, 경찰이 책임 수사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결정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범죄송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범죄송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것을 의미한다. ‘즉결심판청구 기각송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되어, 사건을 형사입건하여 검사에게 송치한 것을 의미한다.

III. 범죄 발생 상황 관련 특성

1. <범죄 발생시간>의 ‘미상’은 범죄 발생시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하여 피해자가 발생시간을 모르는 경우(예: 침입절도 사건에서 피해자가 외출 후 장시간 뒤에 귀가했을 경우, 정확한 침입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미상으로 처리), 목격자의 진술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2. <범죄 발생지> 항목은 총 230개 지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위 분류된다. 먼저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며, 이 중 ‘국내’는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4개 특별자치(세종, 강원, 전북, 제주), 그 외 도 단위 지역을 포함한다. ‘국외’는 총 16개 개별국가와 그 외의 지역을 포괄하는 기타 항목을 포함한다. 참고로, 「2016 범죄통계」부터 마산시와 창원시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창원시’로 단일 표기되었다.

IV. 피의자 특성

1. <피의자특성> 분석 시 다음과 같은 피의자 유형은 통계 집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① 법인피의자, ② 피의자중지자, ③ 성별미상자. 참고로 「2011 범죄통계」까지는 기소중지자를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그 이후 연도부터는 제외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통계 비교 시 해당 기준 변경에 유의해야 한다.
2. <피의자 범행 시 연령>의 ‘14세 미만’ 관련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소년법 처리규정에 따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원표도 원칙적으로 작성되지 않으며, 14세 미만 피의자는 피의자 연령 분석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참고로 「2017 범죄통계」까지는 14세 미만 연령대의 일부가 분석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7년 이전 통계와 이후 통계를 비교할 경우, 연령대별 분석 범위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3. <피의자 범행 시 성별 연령>의 ‘미상’은 피의자의 성별은 파악되었으나, 연령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사례를 의미한다.



4. <피의자 혼인관계>는 다음의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① 기혼(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 ② 미혼(결혼한 이력이 없는 경우), ③ 미상(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5. <피의자 범행 시 성별 정신적 장애 여부> 항목의 분류기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1 범죄통계」까지는 피의자의 정신적 장애 여부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 ‘정상’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였다. 그러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정신상태 미입력 사례를 정상으로 단정 짓지 않고 ‘미상’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이전과 이후의 통계는 집계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도 간 비교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3 범죄통계」부터는 장애인복지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에 따라 정신적 장애를 ① 정신장애 ② 발달장애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취’ 항목은 「2023 범죄통계」부터 ‘범행 시 약물 상용 여부’ 항목의 ‘알코올’ 수치로 명칭이 변경되어 집계되고 있으므로, 2022년 이전의 ‘주취’ 수치와 2023년 이후의 ‘알코올’ 수치를 직접 비교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6. <피의자 국적>의 분류에 있어,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적명을 반영하고, 피의자가 한국인이거나 국적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간주하여 통계를 작성·관리한다. 「2011 범죄통계」까지는 전체 피의자의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 국적이 알려진 외국인에 대해서만 국적별 구성비율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7. <피의자 전과 여부 및 횟수>의 ‘전과’는 피의자가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전과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② 구류형·과료형 처분, ③ 소년보호처분, ④ 기소유예·공소보류·기소중지처분. 추가적으로, 피의자의 전과 입력은 ‘책임송치’된 사건에 한해 통계원표 필수 입력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외 불송치 사건이나 기타 처리사건의 경우에는 전과 입력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2012 범죄통계」부터는 전과 미입력 값을 미상으로 별도 분류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전과 입력이 생략된 경우에도 ‘전과 없음’으로 분류하였기에 연도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8. <피의자 범행 시 직전처분 종류>의 ‘직전처분’은 해당 범행 이전에 피의자에게 적용된 형사처분 또는 그 집행상황을 의미한다. 범행 시점에 집행 중인 처분(예: 수배 중, 집행유예 중, 보석 중 등)이나, 진행 중인 처분이 없는 경우 과거에 받은 형사처분 중 가장 최근의 처분 내역(예: 즉결심판, 기소유예, 선고유예, 보호처분, 가석방, 형집행정료 등)을 기록한 통계이다. 즉, 직전처분은 전과보다 넓은 개념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전과)에 포함되지 않는 처분을 포괄한다. ‘직전처분’ 항목은 책임송치 사건에 한해 필수 입력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미입력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2011 범죄통계」까지는 미상과 없음을 모두 ‘없음’으로 집계하였고, 「2012 범죄통계」부터는 ‘미상’을 별도 분류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9. <재범자 재범종류 및 기간>의 ‘재범’은 피의자가 해당 사건 이전에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아직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이 결정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즉, ‘재범’은 단순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확정 전과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분 이력 전체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이다.
10. <피의자 공범관계>는 피의자의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으로, ‘단독범’, ‘공범’, ‘미상’으로 구분되어 집계된다. 「2011 범죄통계」까지는 공범 관계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경우를 ‘단독범’으로 간주하여 집계하였으나, 「2012 범죄통계」부터는 입력 누락된 경우를 별도로 분류하여 ‘미상’ 항목으로 집계하고 있다.

일 러 두 기

V. 피해자 특성

1. <대표피해자 성별 연령>에서 ‘대표피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 피해자 1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의미한다. 참고로, 「2023 범죄통계」부터 전체범죄 발생 건수에서 피해자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사건(예: 마약류 소지, 위반행위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연도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통계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전체범죄 발생 건수와 대표피해자 수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와 피해자가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국가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성별은 ‘미상’으로 분류된다.
2. <발달장애 대표피해자 성별 연령>의 ‘발달장애 대표피해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대표피해자를 의미한다.
3. <전체 피해자>는 대표피해자와 달리, 범죄사건에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수를 국적·성별·유형에 관계없이 총합계로 산출한다. 예컨대 하나의 사건에 내국인 피해자 2명, 외국인 피해자 1명, 피해 법인 1개가 있을 경우 총 4명으로 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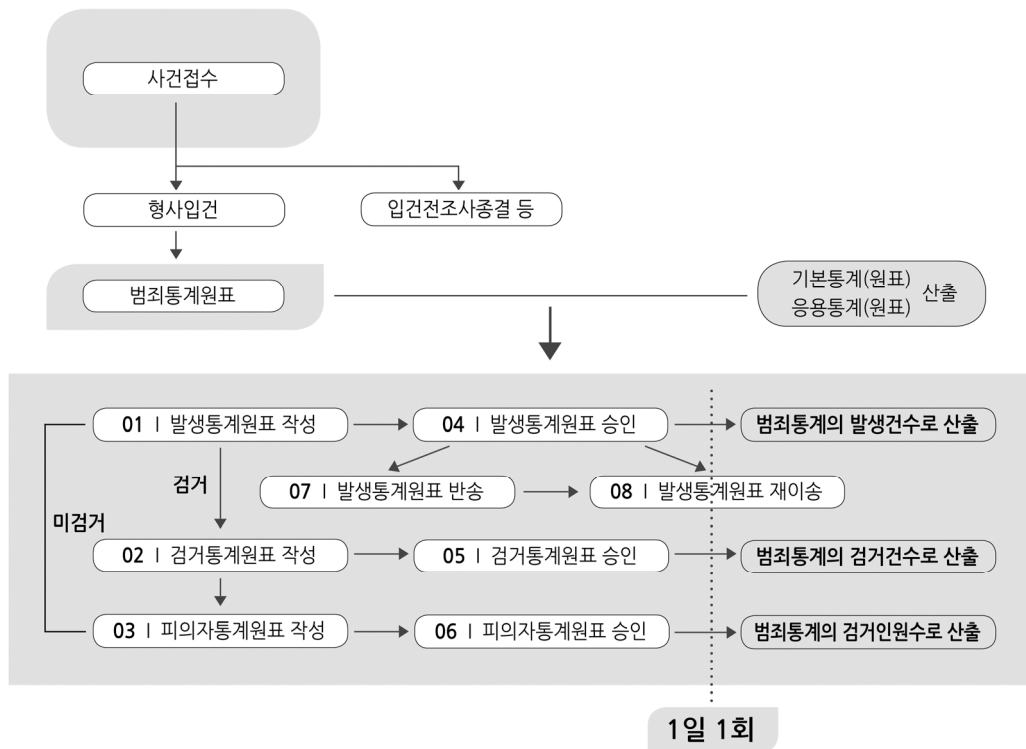
VI. 피의자 유형

1. <피의자 유형>에서 ‘피의자’는 형사 피의자를 의미하며, 이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자로서,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포함한다. 즉, 피의자 수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과 무관하게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2. <피의자 유형>의 세부분류에서 ‘미성년피의자’는 범행 당시 만 18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한다. ‘학생 피의자’는 범행 당시 직업이 학생(초·중·고·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한다. ‘공무원 피의자’는 범행 당시 직업이 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 ‘전과 피의자’는 본 사건 이전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신적 장애 피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범행 당시 정신장애 또는 발달장애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장애에 관한 피해자·보호자의 진술이 뒷받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외국인 피의자’는 범행 당시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고령 피의자’는 범행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의미한다.
3. <공무원 피의자 소속기관>의 분류에 있어, 기관 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 개편 등 정부 조직 편제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통계 공표 연도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므로, 연도별 통계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전라북도는 2024년에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특별자치’ 체계로 재분류되었다. 또한 2024년 5월부로 ‘문화재청’의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어 통계 항목명이 함께 변경되었다. 2025년에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속기관 명칭이 변경되어 통계 항목명이 함께 변경되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025. 10. 1. 시행, 2025. 12. 31. 기준)



■ 「경찰청 범죄통계」의 전산 작성 및 관리 절차

1. 경찰청 범죄통계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전산 작성된 발생·검거·피의자원표를 ‘입력 → 승인 → 배치’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범죄통계시스템(CSS)을 통해 산출된다. 이 중 ‘배치’는 승인된 통계원표의 변동사항(원표생성, 원표삭제, 원표 내용 수정)을 매일 00시를 기준으로 형사사법포털에 반영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하단의 그림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범죄통계시스템(CSS)에 반영되기까지의 전체 처리 절차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 1〉 경찰청 범죄통계의 작성·승인·산출 흐름도

■ 「경찰청 범죄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1.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9호, 2026.7.1.)

제86조(범죄통계원표) 사법경찰관리는 범죄를 수사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한다.

2.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216호, 2026.7.24.)

제2조(범죄통계원표작성 및 입력) ①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고소·고발, 신고, 인지 등을 통해 범죄 발생을 알게 된 때에는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사건을 처리하여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하는 때에는 검거통계원표 및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원표는 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정하여진 항목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③ 경찰공무원이 원표를 작성한 때에는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은 작성된 원표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원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통계원표의 경우에는 범죄가 발생한 경찰관서의 수사과장이 승인하여야 한다.